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77
----------	---------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최동철, 박학용, 정정희,
신찬호, 박성호, 김성한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서구 7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음.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

3조의 2)

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조의2

나. 협조부서 : 교통행정과

다. 입법예고 : 2023. 5. 31. ~ 6. 8.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조 중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를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u>규정하여</u> ----- ----- ----- ----- -----.</p> <p><u>제3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u>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u>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u></p>
<p>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사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u>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u> 따라 운전면허를 사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사진 반납에 따른 지원) ----- <u>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u>----- ----- ----- ----- -----.</p>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